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1. 3.(목) / 총 4매(본문2)
담당 부서	지역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손덕환, 사무관 이종찬, 주무관 김정은 • ☎ (044) 201-3665, 4595
보 도 일 시		2019년 1월 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,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 집중육성

도로·공연장 등 기반시설에 국비 92억 지원…세제감면·규제완화 등 혜택

□ 진도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휴양·체류형 관광거점 육성사업인 전남 **진도 '해양복합관광단지'**(총사업비 3,508억 원)가 정부 지원을 받아 **지역의 새로운 활력**을 더하기 위한 **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**된다.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김현미)는 3일, **'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'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**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○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관광단지 진입도로, 로컬푸드판매장, 공연장 등 **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92억 원**이 **지원**되고, 각종 **세제·부담금 감면** 및 **규제특례** 등이 **적용**되어 사업이 **조기 활성화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≪ 투자선도지구 개요 ≫

○ (**개요**)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국비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제도

○ (**현황**) '15년～'18년 공모를 통해 16개 사업선정(지구지정 완료 5개)

○ (**지원**) 건폐율·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(투자선도지구 전체) / 사업 당 최대 100억 원 재정 지원 및 세제·부담금 감면 등

□ **'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'는** 진도군의 자연경관, 로컬푸드, 민속문화예술공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**휴양·체류형 관광지** 조성 사업으로 지역에 **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특히, 전국적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 **대형 리조트 유치**를 통해 **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**하고 **주요 관광지**로서 **인지도**를 **제고**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또한, **지역특산물(로컬푸드) 판매장 및 공연장** 등 **기반시설을 추가**로 지원하여 리조트 관광객을 지역으로 연계·확산시킴으로써 **지역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**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**진도군**은 "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해양복합관광단지 **사업**이 **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.**"라며, "해양복합관광단지를 **지역 활력 창출의 기회로 삼겠다.**"라고 밝혔다.

《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위치도 및 조감도 》

□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"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**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**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."라며, "지구 지정 이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**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** 수 있도록 **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**해 나갈 계획이다."라고 밝혔다.

OPEN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이종찬 사무관(☎ 044-201-366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전남 진도군 해양복합관광단지

□ 주요 내용

○ **(사업내용)** 진도의 우수한 **해양관광자원**을 토대로 **지역 문화예술**과 함께하는 **휴양·체류형 관광거점** 육성

* (주요시설) 호텔·콘도, 진도전통문화체험관, 로컬푸드 판매장, 공연장 등

○ **(사업위치/면적)**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일원 / 558,765㎡

○ **(시행자/기간)** ㈜대명레저산업 / 2016～2022년

○ **(총사업비)** 3,508억원(국비 92*, 지방비 3, 민간 3,508)

* 선도지구외 도로 선형 개선, 로컬푸드판매장, 공연장 등 기반시설 92억 지원

○ **(추진경과)** 투자선도지구 선정('16.9)→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착공('17.4)→ 관계부처협의('18.8)→ 국토정책위심의('18.12)

< 투자선도지구 지정사업 토지이용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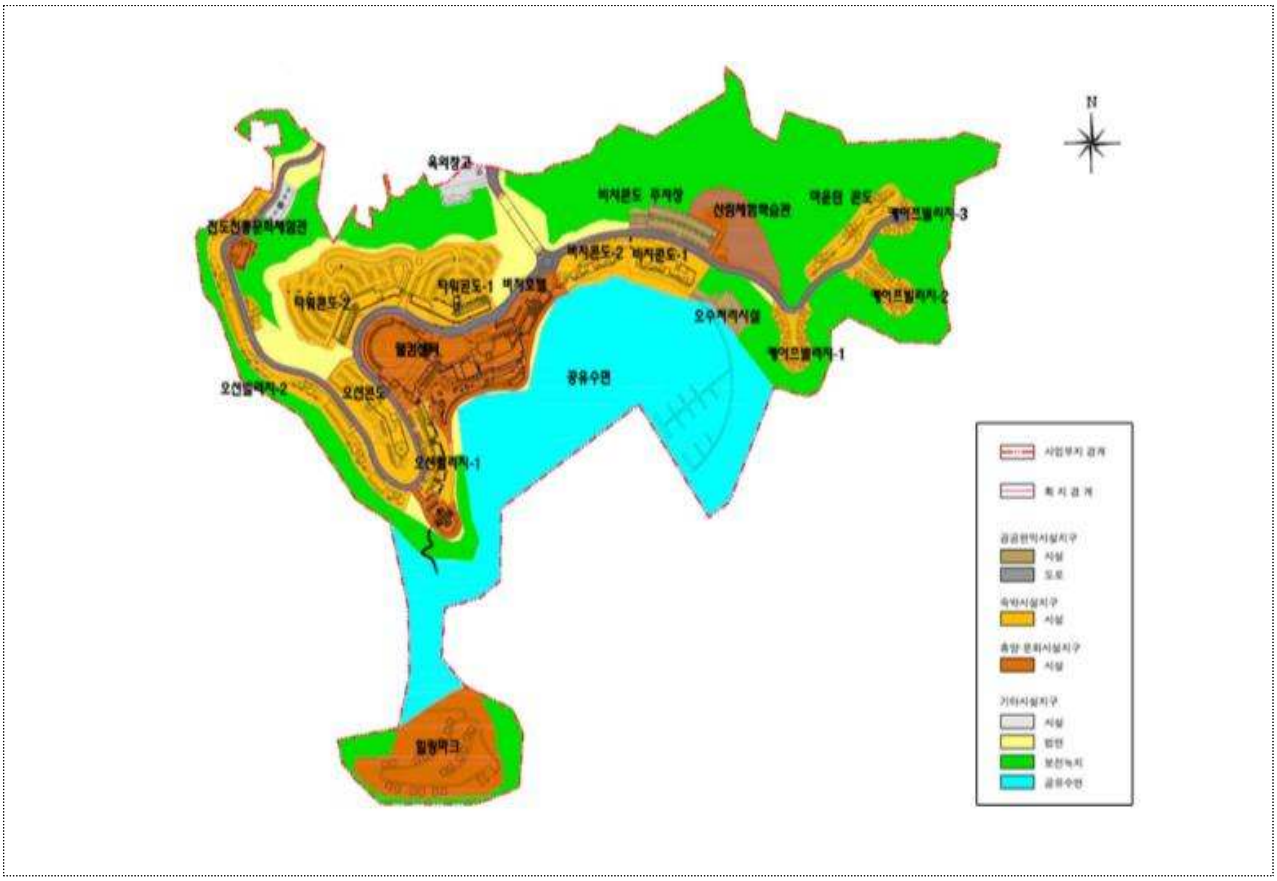

참고2 투자선도지구 제도 개요

1. 목 적

□ 발전잠재력이 있는 **지역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, 패키지 지원**하여 **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**하고 **민간투자 활성화**

*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('15.1.1)과 함께 제도 도입

2. 적용대상 및 유형

□ **(적용대상) 수도권·제주를 제외**한 지역의 **신규 또는 기존** 지역개발 사업* 중 **발전잠재력**이 있고 **경제적 파급효과**가 **큰 지역 전략사업**

* 산업단지, 물류·유통단지, 관광단지, 관광휴양시설, 역세권 개발사업 등

□ **(유 형) 낙후지역**(성장촉진지역·특수상황지역)에 적용되는 **발전촉진형**과 **낙후지역 외**에 적용되는 **거점육성형**으로 구분

○ 이와 함께 **주요정책과의 연계성 강화**를 위해 **'KTX지역경제거점형'** ('16~'17년), **'혁신도시 연계형'**('18년) 등 **별도의 유형** 설정

* '18년부터 KTX형은 일반형 사업으로 신청 가능

3. 주요 혜택

□ 유형(발전촉진형·거점육성형)에 따라 건폐율·용적률 완화 등 73종 **규제 특례, 재정지원*, 세제·부담금 감면** 등 혜택 **제공**

* 재정지원은 발전촉진형 중 성장촉진지역(낙후도가 심한 70개 시・군, 행안부·국토부 공동고시)에 한해 사업 당 100억원 이내 지원

구 분	발전촉진형(낙후지역)		거점육성형(낙후지역외)
	성장촉진지역	접경・도서지역	
유형별	사업당 100억원	-	-
	세제・부담금 감면		-
공 통	규제특례(건폐율·용적률 완화, 특별건축구역, 인허가의제 등 73종)		
	자금지원(지자체), 인허가지원 등		